

# 제53-02차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 안건 토의

1) 광주지회 취업사기, 도박 관련자 징계 및 대의원 성원에 관한 건  
**결정내용** 도박 관련 대의원들은 지부운영위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징계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지부운영위에서 마련한다.

2) 2015년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건 **안건병합**

- 결정내용**
- 임금
    - 각종 수당지급 기준 변경 요구(요구안 삭제)
  - 성과급[2-4]회사가 매입한 자사주(405만주) 지급 요구 건/ 안건 병합 논의  
 2014년 당기순이익의 30%(우리사주 무상 출연 포함) 조합원(전 종업원) 및 사내협력업체 조합원 및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요구 한다.
  -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원안통과)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2가지 요구안 추가)
    - 단협별도협의를 위해 250만원(귀향비, 하계휴양비, 유류비, 사이버머니) 통상임금으로 적용 요구한다.
    - 상여금의 시급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226으로 한다.
  - 휴일근로수당 할증 요구(원안통과)
  - 허성욱, 이용수 조합원 복직 요구(원안통과)
  - 손배, 기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요구(원안통과)
  -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원안통과)
  -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건(판매지회 대의원 요구로 요구안 삭제)

2-1) 현대/기아차 생산기술 수당 동일 지급 요구 건  
**결정내용** 임금 별도 요구안으로 가져간다.

2-2) 8+8 집행부 개악안 폐기 건  
**결정내용** 8+8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 재논의 한다.

2-3) 영업직 당직 연장근로 임금지급 요구 건  
**결정내용** 월급제 요구안 중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안 삽입

2-4)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 [405만주] 지급 요구 건  
**결정내용** 임금요구안 2, 성과급에서 병합 논의

2-5) 고열수당 신설 건  
**결정내용** 광주 소재공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과 수당 등급 인상등을 지부지회 정책실과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2-6) 의장수당 신설 건  
**결정내용** 의장수당 신설을 요구한다.

2-7) 신차[F/L] 차량 구입 관련 건  
**결정내용** 단협 개정시 확대를 요구한다.

2-8) 직원용 차량 구입 관련 건  
**결정내용**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2-9) 화성공장 근처 서비스센터 신축 건  
**결정내용** 지부, 지회 사업으로 서비스센터 신축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2-10) 인원충원에 관한 건  
**결정내용** 단협에 의거 자연감소, 정년퇴직자 인원충원을 요구하며,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장기부재자 정규직 충원을 요구한다.

2-11) 생산기술 개발센터(의왕연구소) 분사계획 저지 및 생산기술인원 충원 건  
**결정내용** 일반직 인원충원과 협의체 구성 관련 노사협약에서 논의한다.

## 정규직 대의원 별도요구안 상정

- 신입사원 신호봉표 개선 및 심야보전 수당 적용 건  
**결정내용**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 논의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버스 특근 입찰에 관한 건  
**결정내용**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12월 말일 야간근무자 근무면제 요구 건  
**결정내용**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 논의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사내하청 임금요구안

- 임금
  - 각종 수당지급 기준 변경 요구(요구안 삭제)
- 성과급[2-4]회사가 매입한 자사주(405만주) 지급 요구 건/안건 병합 논의  
 2014년 당기순이익의 30%(우리사주 무상 출연 포함) 조합원(전 종업원) 및 사내협력업체 조합원 및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요구 한다.
-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원안통과)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2가지 요구안 추가)
  - 단협 별도협의를 위해 240만원(귀향비, 하계휴양비, 유류비, 선물비) 통상임금으로 적용 요구한다.
  - 상여금의 시급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240으로 한다.
- 휴일근로수당 할증 요구(원안통과)
- 월급제 신호봉표 요구  
 - 신호봉표 재원을 마련한다.
- 손배, 기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요구(원안통과)
-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원안통과)

## 사내하청 대의원 별도요구안 상정

- 사내하청 특근지원금 개선 요구 건  
**결정내용**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고소고발 관련 원청 요구안으로 가져가 달라 요구  
**결정내용** 고소고발 관련 정규직과 동일하게 철회를 요구한다.(지부 및 5개지회장, 분회장은 제외한다.)
- 주간연속 2교대 복지포인트 지급 요구 건  
**결정내용**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가져 간다.
- 이동우 해고자 복직 요구 건  
**결정내용**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복지수당 신설 건  
**결정내용**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부재대응 관련 인원충원 요구 건  
**결정내용**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가져 간다.
- 노후장비 교체 건  
**결정내용**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가져간다.

- 광주 2공장 대의원에 관한 건  
**결정사항**
  - 동영상에 촬영된 대의원은 금일부로 자격을 정지하고 징계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지부운영위에서 마련한다.
  - 사측 관련자는 징계를 요구한다.
- 5월 12일 특별교섭 회의록 폐기 및 특별 교섭 재개 건  
**결정사항**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재개한다.

5) 고용농성중인 최정명, 한규협 신분보장의 건  
**결정사항**

- 최정명, 한규협 동지가 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지부운영위를 신속히 개최한다.
- 지부 및 5개지회 상집간부, 대의원 전체 각 1만원 거출한다.

6) 대표소송 최고장 및 개인별 위임계약서 서명 중지 요구에 관한 건  
**결정사항**

- 대표소송 최고장 및 개인별 위임계약서 서명작업을 진행한다.
- 지부와 지회간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 대표소송 회계감정 비용 방안을 마련한다.

7) 기아차지부 1박 2일 조합원 집체교육에 관한 건  
**결정사항** 1박 2일 조합원 집체교육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24대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며, 5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관련 방안을 확정한다.

8) 기아차지부 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에 관한 건  
**결정사항** 개정안 수정 및 삭제하고 통과

9) 신분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결정사항**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한다.

10) 조합원 본인 사망시 지급 경조금 인상에 관한 건  
**결정사항** 현행유지

11) 5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수임에 관한 건  
**결정사항** 15년 임금요구안 고소고발 문제와 함께 병행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2)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인원 동일 호봉 적용 건  
**결정사항** 특별교섭 속에서 논의한다.

13) 52-01차 및 5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처리에 관한 건  
**결정사항** 14년 고용안정위 7단 DCT 전개 관련 지부지회 고용실 사업으로 10만대 생산물량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설비 전개에 대해 협의한다.

14) 구사내 폭력행사 사측 지시자 책임자 처벌 건  
**결정사항** 6월 3일 건은 사실조사 후 집행부사업으로 진행하고, 고소고발 관련 15일투요구안에 포함한다.

15) 공상처리에 관한 건  
**결정사항** 공상 관련 실태파악 후 차별받는 조합원이 없도록 하며, 12년 통산위 안건 10번 공상처리 수평전개건은 16년도 통합산보위 안건 상정하여 논의한다.

16) 장기부재 알바 투입 중단 건  
**결정사항** 장기부재 대응 관련 정규직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노동조합 사업 속에서 지원반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17) 고용안정 회의록 폐기 건  
**결정사항** 단협의 내용으로 간사회이록 작성한다.

18) 2014년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록 8번 재 협의 건  
**결정사항** 단협의 내용으로 간사회이록 작성한다.

19) 광주지회 함성소식 및 상집간부 부적절한 문자발송 조치에 관한 건  
**결정사항** 안건철회

20) 교섭위원 선출 건(대의원)

**결정사항**

정규직		사내하청분회	
소하(2명)	정우택, 황석	소하분회(1명)	윤형모
화성(2명)	지태의, 최교상	화성분회(2명)	박성모, 홍성진
광주(2명)	박재우, 김대용	광주분회(1명)	오귀용
판매(1명)	함영환		
정비(1명)	박정식		

21) 기아자동차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건  
**결정사항**

- 선거관리위원장 박춘원
- 지회별 간사
  - 소하 : 방국환, 화성 : 김술, 광주 : 박홍순, 판매 : 노태근, 정비 : 장이섭

- 22) 기타토의
- 이문화체협 보충협의 요청 건  
**결정사항** 이문화체협 관련 문제점 보충을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지부 대의원대회 진행시 스포츠센터 이용 건  
**결정사항** 현행유지
  - 국민참여재판 근대 협조 요청 건  
**결정사항**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 8월 29(토)~30(일), 15 임투 승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 2차 조합원가족 역사기행 진행



메르스(MERS)사태로 인하여 연 는 전쟁과 분단극복과 한반도 자녀들과 함께 역사기행에 참여하신 조합원 들께서는 일정 관련 문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전쟁과 분단극복과 한반도 평화방향에 대해, 2일차 『아빠와 함께』 주제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5 임투 승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1차 조합원가족 역사기행 앨범



## 3만 4천 조합원의 총단결로 15임투 반드시 승리하자! 15임투, 굵고! 짧게! 강하게! 진행해 임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5년 임금 단체교섭이 8월 11일(화) 상견례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예년보다 늦어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만 노동조합은 15년 임투를 굵고! 짧게! 강하게! 진행해 3만 4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3대 집행부 임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5년 임투의 핵심 투쟁은 8+8/월급제, 상여금 통상임금을 적용한 임금체계개선, 사내하청분회 신호봉표 제정 쟁취가 될 것이다. 현행 8+9 근무형태를 조기에 변경해 국

내공장의 생산량 감소로 임금이 축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있을 때 8+8/월급제, 상여금 통상임금을 적용한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월급제를 통한 임금보전을 미리 해야 한다.

현재 수입차의 내수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15%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로(한국차→중국 수출시 관세 22%/중국차→한국 수출시 관세 8%) 중국 토종업체와 벤츠, BMW, 아우디, GM, 도요타 등의 선진 메이커들의 국내차량 가격보다 30~40% 싼 수입차들이

역수입되면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하락해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측이 물량을 이유로 임금보전 없이 8+8 시행하기 전에 잔업 및 특근수당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종식시키고 안정적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내하청 신호봉표 제정은 그간 집행부마다 도입하려했지만 재원마련 문제로 관철해내지 못했다. 2015년 임투에서는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염원인 신호봉표를 반드시 제정하여 호봉표에 따른 임금

체계를 제도화하여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8월초 하계휴가 이후 2015년 임투 투쟁이 본격 진행된다. 내부적 갈등은 접고 15년 임투를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내야 한다. 노동조합은 하나된 단결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3만 4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015년 임금협상 핵심 요구안

#### 기본급 인상 및 정당한 성과 배분 요구

- 기본급 159,900원 (기본급 대비 7.7%)
- 성과급 영입이익의 30% 지급 요구
  - 2014년 영입이익 2조 5천 7백 2십 5억의 30% 지급요구
  - : 2014년 영입이익 30%(우리사주 무상주출연 포함) 조합원(전종업원) 및 사내하청분회 조합원(전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단, 영입직은 매년 성과급(100%) 지급시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
  - 상여금 정율(750%) + 250만원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지급시 가산 지급 → 휴일, 연장, 심야수당, 년월차 수당 증가
- 사측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
  - 법정수당 비용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할 것임
  - 휴일·연장근무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 이어짐

#### 8+8/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

- 8+8 조기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심야 노동 철폐로 건강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안정적인 월급제 임금체계 완성
  - 전직군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의 26% (41.6hr) 적용
  - 더 이상 잔업에 얽매이는 임금구조 탈피
  -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으로 물량 변동시 임금순실 방지

#### 사내하청 신호봉표 재원마련 요구

- 재원마련 후 신호봉표 제정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반영
- 신호봉표 적용시 공정이동에 따른 시급별 차이 금액만큼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한다.

#### 지부장 인사말

8월 11일(화), 15년 임금 단체교섭 상견례 진행!  
3만 4천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2015년 임투 깃발을 힘차게 올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김종석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계휴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조합원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사 공동 위원회 결렬과 제 53-02차 지부 임시대의원대회로 인해 2015년 임투가 늦어져 조합원동지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부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제53-02차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5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7월 21일(화) 사측에게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발송했습니다.

8+8 교대제 관련 4대 핵심요구를 관철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8 교대제 관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단협의 휴일축소를 최소화하고 ▲ 전환배치 불가, ▲외주화 불가, ▲네크(Neck) 공정의 설비 개선 투자, ▲네크(Neck) 공정의 인원 투입 등 4대 핵심요구와 2016년 1월 8+8 교대제 조기시행을 사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맞추기 위해 관련법을 초과하거나 그간 동종사보다 우위에 있는 단협 사항을 축소하려는 임금체계개선 개악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의 상여금은 동종사와 달리 고정성이 확보되어 통상임금이 명확합니다. 동종사와 연동해 총액임금에 끼워 맞추기 위한 협상행위는 노사관계의 파국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내하청 신호봉표 재원마련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염원인 신호봉표를 제정하기 위한 재원을 요구 하겠습니다. 호봉표에 따른 임금체계를 제도화하여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요구에 만일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3만 4천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하겠습니다.

2015년 임투가 다소 늦어졌으나 23대 집행부는 2015년 임투를 임기내 마무리하여 조합원동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2차 노동시장구조개혁 시도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천명!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15년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혀 노동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개혁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마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4년) 연장 등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총괄임원(CHO) 간담회를 갖고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속 강

조해왔다.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서 올해 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간기업에도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사

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근로기준법은 횡령·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거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런 정책들이 모두 고용불안을 심

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금도 권고사직 등 인력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반해고 지침까지 마련되면 고용안정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이 줄어 노후빈곤 우려가 크고, 정부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2차 구

조개약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고 민중총궐기 준비에 박차를 가해 하반기 투쟁으로 연결할 것"을 밝혔다.

# 2015년 임금인상 요구안

## 1 임금

가. 기본급 : 159,900원 (기본급 대비 77%)

- 1) 호봉승급분 제외
- 2) 적용방법 : 정액인상
- 3) 적용범위 : 기아차 내 전체 조합원
- 4) 적용시기 : 2015년 4월 1일

### 나.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 요구

- 1) 보전/주조 위험수당 확대 적용 요구
- 2) 서비스 수당 인상

구분	인원	현행	요구	인상액
서비스 수당	1,586	17,000원	30,000원	13,000원

### 3) 본인수당 인상 요구

구분	현행	요구
본인 수당	21,000원	30,000원

## 2 성과급 : 2014년 영업이익의 30%

2014년 영업이익 30%(우리사주 무상주출연 포함) 조합원(전종업원) 및 사내하청분회 조합원(전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단, 영업직은 매년 성과급(100%) 지급시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3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

### 가. 근무형태

1조		2조	
07:00 ~ 09:00	노동시간(2시간)	15:40 ~ 17:40	노동시간(2시간)
09:00 ~ 09:10	휴게시간(10분)	17:40 ~ 17:50	휴게시간(10분)
09:10 ~ 11:00	노동시간(1시간 50분)	17:50 ~ 19:40	노동시간(1시간 50분)
11:00 ~ 11:40	식사시간(40분)	19:40 ~ 20:20	식사시간(40분)
11:40 ~ 13:40	노동시간(2시간)	20:20 ~ 22:20	노동시간(2시간)
13:40 ~ 13:50	휴게시간(10분)	22:20 ~ 22:30	휴게시간(10분)
13:50 ~ 15:40	노동시간(1시간 50분)	22:30 ~ 00:20	노동시간(1시간 50분)

- 1) 대상 : 생산직 (교대자, 주간교정자), 공장에 근무하는 일반직
- 2)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월급제 요구

#### 1) 연장근로 수당

##### ◆ 현행 ◆

직군	명칭	적용	통상수당 여부	
생산직	교대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7,368%(정율)	통상수당
	고정자	연장근로수당	실잔업 (2직시 1,33시간)	통상의 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9,587%(정율)	통상수당
기술직	고정자	연장근로수당	실잔업 (1일 30분)	통상의 수당
		정비능력향상수당	통상급 9,587%(정율)	통상수당
	일반직, 영업직	특근수당	통상급 (1일 30분)	통상의 수당
		특근수당	통상임금의 26%	통상의 수당

## ◆ 요구안 ◆

직군	명칭	적용	통상급여부
전 직군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의 26%	통상의 수당

- ▶ 규정 : 1일 8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보전 수당  
→ 회사는 불가피하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영업직, 일반직 당직 포함)

### 2) 연장근로 시간

- ▶ 적용시점 : 2015년 4월 1일
- ▶ 생산기술직은 근무형태변경전(8+8)까지 한시적으로 실 연장근로는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할시 일할 공제한다.

### 3) 상여금 지급 기준 (100% 지급시)

직군	현재	요구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30시간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통상임금의 26%)
일반직	통상임금+통상임금의 26%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통상임금의 26%)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의 26%+ 상여보조금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통상임금의 26%)+상여보조금

\* 근무형태 변경수당은 통상임금의 26%

### 4) 연, 월차 지급 기준 (1개 기준)

직군	현재	요구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통상임금 26%)X150%
일반,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 26%)X150%	

### 5) 심야보전수당

심야 근로 수당	기존(10+10)		현행(8+9,33)		요구(8+8)	
	1일 적용시간	1일 8시간	1일 4.67시간	1일 4.67시간	3.33시간	
적용일	월 10일 기준	월 10일 기준	월 10일 기준	월 10일 기준		
월 적용시간	80시간	46.7시간	46.7시간	33.3시간		
적용방법	월 심야근로시간	월 심야근로 시간	월 심야근로 시간	월 심야근로시간		
월 전환시간		월 33.3시간	월 46.7시간			
심야 보전 수당	적용방법	위 시간의 심야근로수당을 비율로 환산하여 통상수당으로 전환				
	적용일	2013년 3월 1일	8+8 시행시점부터 적용			

## 4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2015년 요구안 기준)

가. 상여금의 지급은 단체협약 제53조 [상여금 지급율]에 의거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 1) 상여금은 년 750% 정율로 지급한다.
- 2) 상여금의 정액은 연250만원을 지급한다.
  - 하기휴가시: 30만원
  - 설날, 추석 : 귀향교통비 160만원, 선물비(사이버머니) 50만원, 추석 유류티켓 10만원

### 나. 적용방법

- 1) 위 상여금 통상임금은 통상급이지만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 2) 상여금의 시급계산시 조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 3) 상여금의 시급계산은 1월 급여를 기준으로 1년간 적용 한다. (단, 산재, 휴직자는 별도로 정한다.)
  - \* 계산법 : 월할상여((연750%+250)÷12월) ÷ 226
- 4) 추가적용 :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재 및 각종 휴직수당

## - 계산방식

구분	적용 방법
근무형태변경수당	월할상여금((연750%+250만원)÷12월)X0.26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시급X1.5X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토,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 : 상여금시급X2X근로시간
	평일 약정휴일 근로수당 : 8시간까지→상여금시급X1.5X근로시간 8시간이상→상여금시급X2
심야근로수당	상여금시급X0.5X근로시간
연월차수당	상여일급((연750%+250만원)÷365)X1.26X150%X개수
미사용 생리휴가	상여일급((연750%+250만원)÷365)X150%X미사용 일수
휴직	공상휴직, 병가, 산재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산전후 휴가 → 휴직자처우에 상여일급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적용시점 : 2013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요구안

- 1) 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입단협 합의시점 까지
- 2) 요구안 : 위 기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다.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2015년 요구안 기준)

구분	현행 (A)	상여금 및 250만원 통상임금 적용(B)	차이 (B-A)	인상률	비고
기본급	2,081,161	2,081,161			
통상수당	629,661	629,661			
상여금(월할)		2,224,842			* 226hr 기준
통상 임금	2,710,822	4,935,664	2,224,842	82.1%	
연장근로	271,545	504,859	233,313	85.9%	* 연장 15.8hr
	휴일근로	486,667	786,923	300,255	61.7%
심야근로	317,106	519,409	202,303	63.8%	* 심야 41.1hr
계 수 당	1,075,319	1,811,190	735,872	68.4%	
월급여	3,786,141	4,522,012	735,872	19.4%	
상여금	2,016,509	2,016,509			
연월차수당	457,790	833,510	375,720	82.1%	* 평균근속 19.53년
휴가비 등	208,333	208,333			* 250만원
월 평균임금	6,468,773	7,580,365	1,111,592	17.2%	

## 5 휴일근로수당 할증 요구

구분	현행	요구안
토,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의 200%
평일 중 약정휴일근로	~8시간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의 150%

## 6 허성욱, 이용수 조합원 복직 요구

## 7 손배,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요구

## 8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

## 9 현대/기아차 생산기술수당 동일 지급 요구

## 10 의장수당 신설 요구

## 11 장기부재자 정규직 총원 요구

# 7월 16일(목), 통상임금 개별집단 소송 및 대표소송 변론 결과

## ■ 통상임금 개별집단소송 관련

원고측 변호인 : 백화명(송영섭), 김기덕(육대웅) 변호사 출석  
피고측 변호인 : 법무법인 태평양 출석

### 금일변론사항

- 통상임금 항목에서는 논쟁하지 않고 신의칙의 내용으로 변론 시작됨
- 피고측(회사, 태평양) : 신의칙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거의 당기순이익을 지금의 와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체불액을 지급하는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청구한 시점(2014년) 혹은 지급할 시점에 대한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게 맞다고 본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체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것이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판단해야 하므로 신의칙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피고측에서는 회계감정 의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으니 재판부에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판부에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 원고측(노동조합: 백화명, 김기덕) : 08년부터 11년까지의 사건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였을 때 실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체불임금 기간 내에 당기순이익에서 지급여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 변론하였음, 피고측이 이야기하는 감정의뢰는 맞지 않다. 회계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감정 의뢰한다는 것은 피고가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에 관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뢰는 반대한다.
- 재판부(판사) : 재판부에서도 신의칙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봤지만 재판부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계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의 공식 감정 혹은 사감정(원피고가 각각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피고측에서는 감정의뢰 신청을 재판부로 해주고 원고측에서는 감정의뢰 반박 서면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회 반박 서면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7일(목) 10시 30분으로 확정하였음

## ■ 통상임금 대표소송 관련

원고측 변호인 : 백화명, 장석우(송영섭) 변호사 출석  
피고측 변호인 : 법무법인 태평양 출석

-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신의칙에 대한부분을 감정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변론 종료

## ■ 차기 변론기일

- 15년 8월 27일(목) 서울중앙지법 562호 오전 10시 30분

# 2015년 사내하청분회 임금인상 요구안

## 1 임 금

가. 기본급 : 159,900원 (기본급대비 10.1%)

- 1) 적용방법 : 정액인상
- 2) 적용범위 : 사내하청 전체 조합원
- 3) 적용시기 : 2015년 4월 1일

나.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과 지급기준 변경 요구

- 1) 유해수당 확대 적용 요구
- 2) 본인수당 신설 - 정규직 조합원과 동일 적용 요구

등급	정규직	사내하청	요 구	적용 기준
본인 수당	21,000원	0	30,000원	정규직과 동일 적용

3) 각종 수당지급 기준

구 분	현 행	요 구
15일 이상 근무	전액	전액
15일 미만 근무	미지급	일할 계산

## 2 성과급 : 정규직과 동일 요구

## 3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

가. 근무 형태

1조		2조	
07:00 ~ 09:00	노동시간(2시간)	15:40 ~ 17:40	노동시간(2시간)
09:00 ~ 09:10	휴게시간(10분)	17:40 ~ 17:50	휴게시간(10분)
09:10 ~ 11:00	노동시간(1시간 50분)	17:50 ~ 19:40	노동시간(1시간 50분)
11:00 ~ 11:40	식사시간(40분)	19:40 ~ 20:20	식사시간(40분)
11:40 ~ 13:40	노동시간(2시간)	20:20 ~ 22:20	노동시간(2시간)
13:40 ~ 13:50	휴게시간(10분)	22:20 ~ 22:30	휴게시간(10분)
13:50 ~ 15:40	노동시간(1시간 50분)	22:30 ~ 00:20	노동시간(1시간 50분)

- 1) 대상 : 전 사업장 생산직 (교대자, 주간교정자)
- 2) 적용시점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월급제 요구

1) 연장근로 수당

◆ 현 행 ◆

직군	명칭	적용	통상수당 여부	
생산직	교대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9.1074% (정율)	통상수당
		연장근로수당	실전입(2직시 1.33시간)	통상의 수당
	교정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11.111% (정율)	통상수당
		연장근로수당	실전입(1일 30분)	통상의 수당

◆ 요구안 ◆

직군	명칭	적용	통상수당 여부
전 사업장 생산직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	통상의 수당

- ▶ 규 정 : 1일 8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보전 수당  
→ 회사는 불가피하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 연장근로 시간

- 적용시점 : 2015년 4월 1일
- 회사는 불가피하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상여금 지급 기준 (100% 지급시)

직군	현 재	요 구
전 사업장 생산직	통상임금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통상임금의 26%)

4) 연, 월차 지급 기준(1개 기준)

직군	현 재	요 구
전 사업장 생산직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통상임금 26%)X150%

5) 심야보전수당

	기존(10+10)	현행(8+9.33)	요구(8+8)	
심야 근로 수당	1일 적용시간	1일 8시간	1일 4.67시간	3.33시간
	적용일	월 10일 기준	월 10일 기준	월 10일 기준
	월 적용시간	80시간	46.7시간	33.3시간
	적용방법	월 심야근로시간	월 심야근로 시간	월 실 심야근로시간
심야 보전 수당	적용방법	월 33.3시간	월 46.7시간	위 시간의 심야근로수당을 비율로 환산하여 통상수당으로 전환
	적용일	2013년 3월 1일	8+8 시행 시점부터 적용	

## 4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2015년 요구안 기준)

가. 상여금의 지급은 단체협약 41조(상여금지급율)의 년 6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 1) 상여금은 년 600% 정율로 지급한다.
- 2) 상여금의 정액은 연 240만원을 지급한다.  
- 하기휴가시 : 30만원  
- 설날, 추석 : 귀향교통비 150만원, 선물비(사이버머니) 50만원, 추석 유틸리티 10만원

나. 적용방법

- 1) 위 상여금은 통상임이지만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 2) 상여금의 시급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 3) 상여금의 시급계산은 1월 급여를 기준으로 1년간 적용 한다. (단, 산재, 휴직자는 별도로 정한다.)  
※ 계산법 : 월할상여((연600%+240)÷12월) ÷ 240
- 4) 추가적용 :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재 및 각종 휴직 수당 - 계산방식

구분	적용 방법
근무형태변경수당	월할상여금((연600%+240만원)÷12월)X0.26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지급X1.5X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토,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 : 상여금지급X2X근로시간
	평일 약정휴일 근로수당 : 8시간까지→상여금지급X1.5X근로시간 8시간이상→상여금지급X2
심야근로수당	상여금지급X0.5X근로시간
연월차수당	상여임금((연600%+240만원)÷365)X1.26X150%X개수
미사용 생리휴가	상여임금((연600%+240만원)÷365)X150%X미사용 일수
휴직	공상휴직, 병가, 산재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형사휴직, 산전후 휴가 → 휴직지처우에 상여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적용시점 : 2013년 12월 18일 부터 적용한다.

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요구안

- 1) 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임금인상 합의시점까지
- 2) 요구안 : 위 기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다.

## 5 휴일근로수당 할증 요구

구분	현행	요구안	
토,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의 200%
	8시간 이상	통상임금의 200%	
평일 중 약정휴일근로	~8시간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의 200%

## 6 월급제 신호봉표 요구

- 1) 신호봉표는 교섭 속에서 논의하여 적용한다.
- 2) 신호봉표 적용시 공정이동에 따른 시급별 차이 금액만큼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한다.

## 7 고소고발 철회 요구

## 8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

## 9 주간연속2교대 복지포인트 지급 요구

## 10 부재대응 관련 대체 인원 총원 요구

## 11 노후 장비 교체 요구

## 동종사 15년 임단투 진행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기아차	- 8/11(화), 15년 임금 단체교섭 상건례	
현대차	- 7/28(화), 15차 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협상 마무리 ▲기본급 7.84%(15년9900원) 인상, ▲지난해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8 단축 등	8월 11일(화) 16차 교섭 예정
한국 GM	▲기본급 8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5년 말 지급), ▲미래발전장 등	총회 가결
쌍용차	▲기본급 5만원 인상, ▲생산장려금 150만원 지급, ▲신차 출시 격려금 100만원 지급, ▲고용안정협약 체결,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등	총회 가결
르노 삼성차	▲기본급 2.3%(4만2300원)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상반기 250%, 하반기 100%이상),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타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며 임금피크제 및 확장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총회 가결



##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소멸시효 안내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소멸시효는 도표를 참고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사용처와 관련 지속적으로 오프/온라인 이용을 확대해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분	지급일	지급포인트	소멸예정일
'13년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14. 01. 23	500,000	2016. 01. 22
'14년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14. 06. 18	500,000	2016. 06. 17
'15년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15. 06. 10	500,000	2017. 06. 09

## 2015년 기아자동차 가족 독감예방접종 시행 안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간 독감예방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은 기존 인터넷(kia.onlinemed.co.kr) 및 콜센터(1566-7775번)와 함께 스마트폰(온라인메드 어플리케이션 설치)을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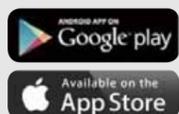
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기아자동차 가족 독감을 시행하는 병원 중 원하시는 병원과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1950.12.31일 이전 출생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므로 국가지정의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무료

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접종이력 및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이 지원되므로 만65세 이상은 예방접종 전산 체계화를 위해 접종당일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예약 기간 : 08/17 ~ 09/12
- 접종 기간 : 10/01 ~ 11/14
- 예약 방법 :  
\* 인터넷 (kia.onlinemed.co.kr)  
\* 콜센터 (1566-7775)  
\* '온라인메드'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감예방접종 방법

※ 2015년 적용 사항으로 8월 17일부터 오픈



①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 '온라인메드' 검색, 어플 설치

② '온라인메드' 아이폰 생성

③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로그인, 원하는 날짜 및 병원 선택